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56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손명수 · 문진석 · 김영배
문정복 · 강준현 · 문금주
황정아 · 어기구 · 전용기
김남근 · 한민수 · 부승찬
김한규 · 모경종 · 백승아
남인순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절차·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명 시험 응시 및 항공신체검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을 우려한 응시자 또는 피검사자가 본인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가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하는 법적 근거와 효력의 정지 및 회복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4조제4항 등)
-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 응시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항, 제43

조제4항)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
한 행위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
명 시험의 응시 및 신체검사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5
항)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제5
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⑥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 경우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3항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

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제적성
검사를 받을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년간”을 “2년의 범
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자격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u> <u>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u> <u>⑥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 경우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	제4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

증명·관계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계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계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계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증명·관계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 7. (현행과 같음)

④ -----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⑤ -----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u>2년간</u> 이 법에 따른 자격 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⑥ (생략)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14. (생략) ⑥ ~ ⑩ (생략)	----- ----- ----- ----- -----<u>2년의 범위 안에서</u>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u> <u>동안</u>----- ----- -----. ⑥ (현행과 같음)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자격</u> <u>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u> 2. ~ 14.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	---